

명예교수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교육부령 제627호에 의하여 명예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자격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.

1. 직전총장으로서 명예롭게 퇴임한 자
2. 정교수로 퇴임한자로서 보직을 역임하고 공로가 있으며 20년 이상 본교에 재직한 자
3. 교육과 학술면에서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으며 국가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제 3조(추대절차)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1. 소속학과에서 명예교수 추천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인사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한다
2. 총장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교수로 추대한다.

제 4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는 소속 학과장이 총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1. 명예교수 추천 받은 자의 이력서
2. 교육 및 학술분야 공적 개요서
3.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
-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

제 5조(처우) 명예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.
2. 명예교수는 본교 제반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으나 교수회의에서는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

제 6조(영예교수 기간) 명예교수의 기간은 70세까지로 한다.

제 7조(해촉)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해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